

03 공탁물(공탁의 목적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23 법무사)

- ① 가압류해방공탁의 목적물은 금전에 의한 공탁만 가능하다.
- ② 변제의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않거나,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공탁에 과도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방매하여 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
- ③ 상호가등기를 위한 공탁의 경우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으로 공탁할 수 있다.
- ④ 기명식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물을 수령하는 자가 즉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에 배서를 하거나 양도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⑤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공공용지를 수용 또는 취득하고 그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피수용자에게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공탁하는 경우 공탁물은 당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금전 또는 채권으로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 있어서도 현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을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공탁을 하여야지 현금 대신 채권으로 지급하거나 공탁을 할 수는 없다.

정답) ③

해설) ③ 상호가등기를 위한 물취공탁은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공탁물은 금전만이 허용될 뿐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보증보험증권)를 제출할 수는 없다.

12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한 공탁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23 법무사)

ㄱ. 공탁규칙 제70조 제1항 제1호 '개인회원'은 공탁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공탁규칙 제70조 '사용자등록'을 할 수 있다.

ㄴ.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공탁액 6천만 원)사건의 피공탁자인 丙은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ㄷ. 甲은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乙에 대한 채무 1억 원을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ㄹ. 전자공탁시스템에 사용자등록을 한 법무사회원이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금 출급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무사회원이 전자서명을 하였다면 청구인 본인의 전자서명은 요하지 않는다.

ㅁ.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에 청구인은 공탁금 출급청구서를 출력하여 공탁금 보관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탁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ㄴ, ㄷ, ㄹ

③ ㄷ, ㄹ, ㅁ

④ ㄴ, ㄹ, ㅁ

⑤ ㄱ, ㄷ, ㅁ

정답) ⑤

해설) ㄴ 공탁액이 금 5천만 원 이하인 금전공탁사건에 대한 공탁금 출급·회수청구만 가능하다, ㄹ 변호사 또는 법무사회원이 전자문서에 의하여 지급청구하는 경우에는 변호사회원 또는 법무사회원의 전자서명과 청구인 본인의 전자서명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06 공탁관의 심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23 법무사)

- ① 공탁자가 조건부 공탁을 한 경우에 피공탁자가 조건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탁관은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없다.
- ②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공탁관으로서 전부명령의 유효 무효를 심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공탁물회수청구채권이 미리 압류 및 전부되었다는 이유로 공탁금회수청구를 불수리한 공탁관의 처분은 정당하다.
- ③ 저당채무의 변제는 원칙적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앞서 이행되어야 하므로 저당채무의 변제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동시이행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를 변제공탁함에 있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소요될 서류 일체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한 경우에는 위 공탁은 변제의 효력이 없다. 다만, 공탁관은 그러한 특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특약이 있는 것으로 하는 공탁신청이 있으면, 그러한 특약의 유무에 대하여 심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를 수리할 수밖에 없다.
- ④ 공탁신청 시 공탁서 및 첨부서면의 기재 자체로 보아 공탁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분명한 경우나 해당 계약이 무효라서 공탁에 의하여 면책을 얻고자 하는 채무의 부존재가 일견 명백한 경우에는 공탁신청을 불수리할 수 있다.
- ⑤ 공탁관은 조사단계에서 서류에 불비한 점이 있거나 공탁사유 또는 지급사유가 없으면 보정이나 취하를 권유할 수 있고,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

정답) ⑤

해설) ⑤ 공탁관은 조사단계에서 서류에 불비한 점이 있거나 공탁사유 또는 지급사유가 없으면 보정이나 취하를 권유할 수는 있을 것이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접수 자체를 거절할 수는 없다.

07 공탁물 납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23 법무사)

- ①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을 하는 경우 공탁관은 공탁물보관자에게 가상계좌번호를 요청하여 그 계좌로 공탁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 ② 공탁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시기는 공탁관의 수리처분이 있을 때가 아니라 공탁자가 공탁물을 공탁물보관자에게 납입한 때이다.
- ③ 공탁자가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을 신청하였는데, 착오납입한 경우 공탁물보관자의 확인이 있으면 언제라도 납입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공탁자가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 시 공탁관은 공탁금보관자로부터 납입전송을 받은 후 지체 없이 보관 중인 공탁서에 납입증명을 하여 공탁자 또는 정당한 대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⑤ 공탁자가 계좌번호 오류, 은행의 전산다운 등의 사유로 납입마감일의 통상 업무시간까지 공탁금을 납입하지 못한 경우 당해 공탁사건은 실효처리 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③

해설) ③ 공탁자가 착오납입 등을 한 경우 납입당일에 한해 통상 업무시간 전까지 공탁관의 확인을 받아 공탁금보관자에게 납입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공탁소(시·군법원 포함)에는 납입취소 신청서를 비치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08 공탁금 납입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3년 법원사무관 승진)

- ① 시·군법원 공탁소를 포함하여 전국 모든 공탁사건에 대하여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납입을 할 수 있다.
- ② 공탁자가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을 하는 경우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절차에 따라 공탁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 ③ 공탁자는 가상계좌로 공탁금이 납입되기 전까지는 가상계좌 납입 신청을 철회하고 관할공탁소 공탁금보관자에게 직접 납입할 수 있다.
- ④ 공탁자가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을 신청한 경우 공탁관은 공탁수리 후 가상계좌번호가 기재된 납입안내문과 함께 공탁서를 공탁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④ 공탁관은 공탁금보관자로부터 가상계좌번호를 전송받은 후 **공탁서는 보관하고** 납입안내문을 출력하여 공탁자에게 교부하여 납입기한 안에 동 계좌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관련선례 : 공탁금 지급이 완료된 후에도 공탁서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1. 공탁서 정정이란 공탁서에 공탁수리 전부터 존재하는 명백한 표현상의 착오 기재가 있음을 공탁수리 후에 발견한 경우에 정정 전·후의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오류를 시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공탁서 정정에 관한 공탁규칙 제30조에는 정정신청의 종기에 관한 규정이 없고, 특히 토지수용절차에서는 공탁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위해서 공탁서의 명백한 표현상의 착오 기재를 정정할 실익이 있으므로, 공탁자는 공탁금이 지급된 후에도 공탁서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2. 그런데 공탁서의 정정은 이미 성립한 공탁의 법률관계에 따른 공탁의 법적 안정성과 공탁당사자의 실제적 권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탁서 및 첨부서면 전체취지로 보아 공탁서에 명백한 표현상의 오류가 있을 때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만일 공탁소가 보관하고 있는 공탁기록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면 공탁관은 정정신청서 및 그 첨부서면과 공탁원장 등을 참작하여 정정신청의 수리 여부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공탁선례202303-1).

01 인감증명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2009 법무사

- ① 관공서가 3천만원의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종중이 2천만원의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경우 공탁관이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종중대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 ③ 공탁물을 출급청구하는 경우 공탁서와 공탁통지서를 모두 첨부하는 때에도 인감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공탁물을 회수청구하는 경우 공탁자가 공탁서에 날인한 인영과 공탁물회수청구서에 날인한 인영이 동일한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 ⑤ 종중이 공탁을 신청하는 경우 규약과 대표자의 자격증명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그 자격증명서에는 2명 이상의 성년이 인감도장을 찍은 후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해설**
- ① 관공서가 공탁물의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공탁금액에 관계없이 인감증명서 제출이 면제된다.
 - ②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 ④ 공탁물을 회수청구하는 경우 공탁자가 공탁서에 날인한 인영과 공탁물회수청구서에 날인한 인영이 동일한 것은 인감증명서 제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종중이 공탁 지급(출급이나 회수) 청구를 하는 경우에 요구되는 내용이다. 공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약과 대표자의 자격증명서면을 첨부하면 된다.

아래내용으로 해설수정

⑤ 지문은 종중이 공탁금을 지급(출급.회수)청구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면이다. 공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약과 대표자자격증명서면만 첨부하면 된다. 또한 종중이 공탁금을 지급(출급.회수)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자격증명서에는 2명 이상의 성년인 사람이 사실과 같다는 뜻과 성명을 적고 자필서명한 다음 신분증을 첨부(인감요구사무 감축추진에 맞추어 공탁규칙을 개정하여 자필서명을 하고 신분증사본을 첨부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하여야 하는 것이지,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을 날인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 ④ 변제공탁금 출급청구에 대하여 공탁관의 인가를 받은 공탁금출급청구서를 공탁금보관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피공탁자가 분실한 경우 공탁관은 공탁금이 남아 있더라도 이미 한 출급청구에 대한 인가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 ⑤ 피공탁자가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공탁물 출급청구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때 위 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 제출은 요하지 않는다.

해설 ① 전자공탁은 일괄신청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항고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인가받은 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를 분실한 청구인이 공탁물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청구인은 사실증명신청서 2통을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발급받은 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를 청구하는 경우 공탁물보관자는 분실한 공탁물 지급청구서에 의하여 이미 공탁물 지급한 때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구에 따라 공탁물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승낙서에는 당사자인 이해관계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아래내용으로 해설수정

③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항고할 수 있다(공탁법 14조 2항). 민사소송법에 의한 항고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항고에 이를 준용하므로(비송법 23조) 항고의 제기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하고(민소 445조), 원심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판을 경정하여야 한다(민소 446조). 항고법원의 재판은 이유를 붙여야 한다(비송법 22조).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로 수정

09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23 법무사)

- ① 집행법원이 공탁관에게 지급위탁서를 송부하고 채권자에게 자격증명서를 교부하는 사무는 공탁관의 공탁사무가 아니므로 그 사무에 관한 집행법원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면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공탁신청이 불수리된 후 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때에는 불수리결정연도 다음해부터, 관할 지방법원이 이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때에는 기각 또는 각하결정이 있는 다음해부터 5년간 공탁기록을 보존한다.
- ③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전부채권자가 전부금액에 해당하는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였으나 공탁관이 선행하는 가압류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를 불수리하고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사유신고하여 배당절차가 개시된 경우, 공탁관은 여전히 해당 공탁사건에 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할 지위에 있으므로, 위 공탁관의 불수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이익이 있어 적법하다.
- ④ 공탁관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 공탁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⑤ 법원은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리할 경우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권을 전제로 처분 당시 제출된 신청서류 등에 의하여 그 처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해설) ③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전부채권자가 공탁공무원에게 전부금액에 해당하는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였으나 공탁공무원이 선행하는 가압류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를 불수리하고 민사소송법 제581조, 공탁사무처리규칙 제52조에 따라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사유신고를 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개시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공탁공무원으로서는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따라 공탁금을 각 채권자들에게 분할 지급할 수 있을 뿐 해당 공탁사건에 관하여 더 이상 어떠한 처분을 할 지위에 있지 않게 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

**05 공탁관계서류의 열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23 법무사)**

- ① 피공탁자의 채권자가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압류할 목적으로 하는 공탁관계 서류에 대한 열람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② 공탁자 甲이 친구 乙에게 공탁관계서류의 열람을 위임한 경우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甲의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공탁사건에 관하여 공탁의 확인을 목적으로 공탁관계서류를 열람시킨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 ④ 공탁당사자는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된 공탁관계서류에 대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열람을 신청한 자는 공탁관이 열람을 승인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공탁관계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 ⑤ 변제공탁의 공탁자는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된 공탁관계서류에 대한 열람뿐만 아니라 전자공탁시스템으로 처리한 공탁사무에 대한 사실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④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기록의 열람은 공탁관이 열람을 승인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할 수 있다.

07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지침(대법원 행정예규 제1167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2018 법무사

- ① 접수공탁소 및 관할공탁소 모두가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② 접수공탁소에서의 공탁신청의 경우 공탁지는 공탁수리결정 후 접수공탁소 공탁관으로부터 받은 공탁서에 기재된 관할공탁소 공탁관의 보통예금계좌로 공탁금을 납입한다.
- ③ 접수공탁소와 관할공탁소가 같은 광역시에 소재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접수공탁소 공탁관은 공탁신청의 경우 공탁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를 통해 관할의 확인 등 형식적인 사항을 조사한 후 흠결이 있으면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 ⑤ 공탁금지급청구의 경우에는 공탁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공탁(유가증권·물품 포함)에 적용하므로 친구(○○○주식회사 신입사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1,000만원 이하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해설 ②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 공탁을 신청하는 경우 가상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납입을 원칙으로 하며, 가상계좌 채번이 안 되거나 가상계좌입금이 안 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 관할공탁소 공탁관의 보통예금계좌로 납입한다.

해설추가

⑤ 법인의 위임 받은 대리인이 1,00만원 이하의 공탁금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7번문제 복수정답으로

② ⑤

점답 05 ① 06 ② 07 ② 08 ⑤

10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행정예규 제 1167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2023 법무사)

- ① 위 지침은 공탁금지급청구의 경우에는 공탁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공탁(금전, 유가증권, 물품)에 적용한다.
- ② 위 지침은 접수공탁소 및 관할공탁소 모두가 지방법원 본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③ 공탁자는 공탁서 등(공탁서 1부와 첨부서류)을, 공탁금지급청구인은 청구서 등(공탁금지급, 회수청구서 1부와 첨부서류)을 접수공탁소에 제출하면서 우표를 붙인 봉투(원본서류를 관할공탁소에 국내특급우편으로 송부하기 위함)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④ 甲이 乙에 대한 물품대금채무(5백만 원)를 서울중앙지방법원(관할공탁소)에 금전변제공탁한 경우, 피공탁자 乙은 서울북부지방법원(접수공탁소)에 공탁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⑤ 위 지침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제3채무자가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가 경합되어 있음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정답) ③

해설) ① 유가증권과 물품공탁은 제외 ②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인 경우에 적용(시·군법원 제외) ④ 같은 특별시라 안됨 ⑤ 공탁 신청의 경우는 변제공탁의 경우에만 적용(지행공탁 신청은 관할 제한이 없음)

**13 반대급부 조건부 공탁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23 법무사)**

- ①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변제공탁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 말소를 반대급부 조건으로 공탁할 수 없다.
- ②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을 공탁하면서 전세권말소를 반대급부 조건으로 한 것은 유효하다.
- ③ 피공탁자가 공탁자에게 공탁서에 기재된 반대급부의 이행을 제공하였으나 공탁자가 그 수령을 거절하는 때에는 그 반대급부를 변제공탁하고, 그 공탁서를 첨부하여 공탁물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 ④ 부당한 반대급부 조건을 붙인 변제공탁에 대하여 피공탁자가 이를 수락하여 공탁물을 출급하기 위해서는 반대급부 조건을 이행하고 반대급부 이행 증명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⑤ 공탁자가 공탁물수령자로부터 공탁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공탁자에게 교부하라는 반대급부 조건을 붙여 변제공탁한 후 이와는 별도로 같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위 판결은 반대급부이행 증명서면에 해당한다.

정답) ⑤

해설) ⑤ 공탁자가 공탁물수령자로부터 공탁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인 등기필증,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공탁자에게 교부하라는 반대급부조건을 붙여 변제공탁한후, 이와는 별도로 같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비록 위 판결에 기하여 앞서 반대급부조건으로 요구한 각 서류 없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공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할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위 판결을 반대급부이행 증명서면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공탁자가 위 판결에 기하여 그 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반대급부이행 증명서면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8 변제공탁의 공탁물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23 법무사)

- ①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그가 받은 중도금을 변제공탁하였고 매수인이 이를 아무 이의없이 수령하였다면 실제로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매수인의 잔대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매도인의 해제의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 ② 채무의 변제로써 공탁한 공탁물이 채권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피공탁자가 공탁자에 대하여 채권의 일부에 총당한다는 뜻을 통지하거나 공탁물 출급청구서의 '청구 및 이의유보 사유'란에 같은 내용의 유보의사를 기재하고 공탁물을 출급한 경우에는 채권액 전액에 대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 ③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수용보상금을 토지소유자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변제공탁한 경우에, 피공탁자인 토지소유자가 위 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쟁송 중에 보상금 일부의 수령이라는 등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함이 없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는 종전의 수령거절 의사를 철회하고 재결에 승복하여 공탁한 취지대로 보상금 전액을 수령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 ④ 채권자가 채무액에 대해서만 이의를 유보한 것이 아니라 공탁원인인 부당이득반환채무금과 다른 손해배상채무금으로서 공탁금을 수령한다는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한 경우, 공탁원인인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일부소멸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지만, 이의유보 취지대로 손해배상채무의 일부변제로서의 효과는 발생한다.
- ⑤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변제공탁의 피공탁자이나,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한 양수인, 전부채권자, 추심채권자도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④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채권의 성질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없으므로, 차임으로 변제공탁한 것을 손해배상금으로 출급한다는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물을 출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채권자가 채무액뿐만 아니라 공탁원인인 부당이득반환채무금과 다른 손해배상채무금으로서 공탁금을 수령한다는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물을 수령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공탁원인인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일부소멸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또한 이의유보의 취지대로 손해배상채무의 일부변제로서 유효하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채권자의 공탁금 수령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 되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는 위 공탁금을 회수할 수도 없게 됨으로써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출급한 공탁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관련선례 :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집행공탁을 한 후 진행된 배당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한 배당금(잉여금)이 확정된 경우, 공탁원인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채무자가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지 여부

1. 제3채무자가 금전채권의 일부가 압류되었음을 원인으로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은 집행공탁이지만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은 변제공탁에 해당하므로, 공탁원인사실에 다툼이 있는 채무자(피공탁자)는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공탁금을 출급하면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또한 제3채무자가 위와 같이 집행공탁을 한 후 금전채권 전액에 대하여 공탁사유신고를 하여 공탁금 전액을 배당재단으로 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고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 채무자에 대한 배당금(잉여금)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채무자는 공탁금을 출급하면서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지위에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2. 한편 금전채권 전부에 대한 압류 또는 압류경합을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는 경우,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실질적으로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 공탁으로 인하여 채무 변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집행공탁에 따른 배당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한 배당금(잉여금)이 확정된 경우에도, 공탁원인사실에 다툼이 있는 채무자는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공탁선례202307-1).

08 변제공탁물의 지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23 법무사)

- ①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그 토지의 공유자 전원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에는 공유토지에 대한 수용보상 공탁금을 가분채권으로 보아 공유자 각자가 자기의 등기부상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 ② 추심채권자가 집행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추심채권자로서의 지위도 집행채권의 양도에 수반하여 양수인에게 이전되므로, 집행채권의 양수인은 다시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을 필요는 없다.
- ③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수인의 취소채권자들 전부를 피공탁자로 하여 상대적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피공탁자 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따라 각자의 소송에서 확정된 판결 등에서 인정된 가액배상금의 비율에 따라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 ④ 공탁자 및 공탁소에 대한 공탁수락의 의사표시는 구두나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⑤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한 후 공탁물을 회수하기 전에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물을 수령한 자는 공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④

해설) ④ 공탁자에 대한 공탁수락의 의사표시는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구두나 서면으로 할 수 있으나, 공탁소에 대한 공탁수락의 의사표시는 공탁을 수락한다는 뜻을 적은 서면을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공탁규칙 제49조 제1항).

**05절 형사공탁...테마새로 달고
아래 3문제 추가**

01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 특례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23 법원승진)

- ① 형사공탁서에는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는 자신이 해당 형사사건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법원 또는 검찰에서 발급하는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증명서"로 증명하게 된다
- ②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이 할 수 있다.
- ③ 첨부서면으로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법령등에 따라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④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해설) ②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에서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소가 제기되기 전 단계인 형사피의자나 피내사자는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에 근거한 형사공탁신청을 할 수 없고, 민법 제487조에 따른 형사변제공탁절차에 의하여야 한다.탁

**02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의 특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2023 법원승진)**

-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형사공탁을 할 수 있다.
- ② 형사공탁의 신청은 반드시 피해자 주소지 관할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 ③ 형사공탁이 성립된 후 공탁관은 피공탁자 주소지로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④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검찰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할 수도 있다.

정답) ④

해설) ①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에서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소가 제기되기 전 단계인 형사피의자나 피내사자는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에 근거한 형사공탁신청을 할 수 없고, 민법 제487조에 따른 형사변제공탁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공탁법 제5조의2 제1항에서 형사공탁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형사법원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공탁소"에 토지관할을 인정하고 있다. ③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수만큼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소정의 우편료를 납입하여야 한다(공탁규칙 제23조제1항, 제2항 참조). 하지만 형사공탁은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특칙으로서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않고, 공고로 갈음하기 때문에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고, 그에 따른 우편료도 납입하지 않는다. ④ 형사공탁서에는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는 자신이 해당 형사사건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법원 또는 검찰에서 발급하는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증명서"로 증명하게 된다. ⑤ 피고인은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명(홍길동)을 알고 있더라도 공소장 등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홍길○)인 "홍길○"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03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의 특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2023 법무사)**

- ①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해당 형사사건의 사건번호 등을 기재할 수 있지만, 인적사항을 아는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② 형사공탁은 반드시 피공탁자의 주소지 관할법원 소재 공탁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③ 기소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피의자도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다.
- ④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형사사건의 피고인도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다.
- ⑤ 공탁관은 공탁물보관자로부터 공탁물 납입사실의 전송을 받은 때 전자공탁 홈페이지에 형사공탁의 공고를 함과 동시에 피공탁자의 주소지로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① 피고인은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명(홍길동)을 알고 있더라도 공소장 등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홍길○)인 "홍길○"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공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도 기재하지 않는데(공탁규칙 제82조), 형사공탁서에는 피공탁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하는 란 자체가 없습니다. ② 공탁법 제5조의2 제1항에서 형사공탁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형사법원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공탁소"에 토지관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형사공탁 특례의 요건이 피해자의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라는 점과 피공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 해당하는지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주소소명서면이 첨부된 경우 민법 제487조 형사변제공탁절차에 의한다는 점에서 피공탁자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대한 형사공탁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③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에서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소가 제기되기 전 단계인 형사피의자나 피내사자는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에 근거한 형사공탁신청을 할 수 없고, 민법 제487조에 따른 형사변제공탁절차에 의하여야 합니다. ⑤ 형사공탁은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특칙으로서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않고, 공고로 갈음하기 때문에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고, 그에 따른 우편료도 납입하지 않습니다.

125 페이지

아래 내용
별도페이지로 추가

이하...문제 다음에..
별도 파일로 첨부하는 형사
공탁 내용 추가...

09 다음 중 토지수용보상금공탁에 있어서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없는 경우는? ▶ 2010 법무사

- ①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 ②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예고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 ③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2개 개설되어 있고 그 소유명의인이 각각 다른 경우
- ④ 등기기록상 공유지분의 합계가 1을 초과하거나 미달되어 피수용자들의 정당한 공유지분을 알 수 없는 경우
- ⑤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등기 또는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2번 지문 삭제하고
나머지 번호 및 답안
번호 수정

⑤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등기 또는 가등기 및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 공매공고(납세담보물의 공매공고 포함) 등의 기...
경우에도 현 토지소유자의 토지소유권을 부정하는 물권적 분쟁은 아니며...
보상금지급청구권자임에 변함이 없고, 따라서 이 경우는 상대적 불확지공탁...
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 07 ③ 08 ①, ③ 09 ⑤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는 사유로서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2009 법무사

- ① 수용대상토지가 일반채권자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되어 있거나 수용대상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 ②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 ③ 수용대상토지에 예고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 ④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등기부가 2개 개설되어 있고 그 소유명의인이 각각 다른 경우
- ⑤ 등기기록상 공유지분의 합계가 1을 초과하거나 미달되어 피수용자들의 정당한 공유지분을 알 수 없는 경우

해설 ①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등기 또는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및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 공매공고(납세담보물의 공매공고 포함) 등의 기

경우에도 현 토지소유자의 토지소유권을 부정하는 물권적 분쟁은 아니며 상금지급청구권자임에 변함이 없고, 따라서 이 경우는 상대적 불확지공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2번 지문 삭제하고
나머지 번호 및 답안
번호 수정**

10번 다음에 아래문제 추가

11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 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3년 법원사무관 승진)

- ①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금전채권에 대하여 甲의 채권압류 및 전부 명령을 송달받은 후 위 전부금채권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써의 채권양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채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경우 제3채무자는 피공탁자를 '전부권자(甲) 또는 가처분권자'로 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
- ② 수용대상토지에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가처분채권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 ③ 수용대상토지가 일반채권자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되어 있거나 수용대상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수용에 따른 보상금 청구권 자체가 압류 또는 가압류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시행자가 과실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 ④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 통지가 동시에 도달하였거나 그 도달의 선후가 불분명하다면 채무자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③ 수용대상토지가 일반채권자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되어 있거나 수용대상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더라도 그 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청구권 자체가 압류 또는 가압류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의 공탁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23번 다음에 아래문제 추가

24 수용보상금 공탁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23 법무사)

- ① 토지소유자의 채권자가 손실보상이 현금으로 지급될 것을 예상하여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압류를 한 경우에도 토지수용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토지수용의 채권보상요건을 충족하고 공탁사유가 있으면 채권으로 공탁할 수 있다.
- ② 압류나 가압류가 있는 수용보상금을 사업시행자가 채권과 현금으로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압류채권이 금전채권인 수용보상금채권이라면 현금으로 지급하는 수용보상금 부분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공탁할 수 있고, 채권으로 지급하는 수용보상금 부분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각 호의 공탁사유가 있다면 유가증권공탁의 절차에 따라 공탁할 수 있다.
-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이 소득세법 제156조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에 의하여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에서 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
- ④ 수용보상금 공탁은 시·군법원 공탁관의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⑤ 이행의무가 없는 반대조건을 붙여 무효가 된 공탁을 수용개시일 이후에 반대급부가 없는 공탁으로 정정하면 그 공탁이 유효하게 되므로 재결의 효력이 유지된다.

정답) ⑤

해설) ⑤ 이행의무가 없는 반대조건을 붙여 무효가 된 공탁을 수용개시일 이후에 반대급부가 없는 공탁으로 정정하여도 소급하지 않으므로 결국 수용개시일 까지 유효한 공탁을 한 것이 아니므로 재결의 효력이 유지되지 못한다.

정정 요망

03 절 물상대위

01 수용보상금 공탁에 따른 담보물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에 관한 다음 <보기>의 설명 중 옳은 내용만을 모두 고른 것은? ▶ 2019 법원사무관

| 보기 |

- ㄱ.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으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이 확실시되므로 토지수용의 재결 이전 단계에서도 담보물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ㄴ. 담보물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수용보상금의 지급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하는데,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변제공탁한 경우 그 공탁금이 출급되기 전까지는 그 지급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보상금의 변제 효과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 ㄷ.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다른 일반채권자가 먼저 가압류나 압류의 집행을 하였다 하더라도 담보물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집행공탁 후 공탁사유신고를 한 이후에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ㄹ.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만을 이유로 하여 집행공탁을 하고 공탁사유신고를 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가 도래하여 담보물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① ㄱ, ㄴ
- ③ ㄷ, ㄹ

- ② ㄴ, ㄷ
- ④ ㄱ, ㄹ

06 재판상 담보공탁의 담보권이 미치는 범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23 법무사)

- ① 보전명령이 부집행. 집행불능인 경우라도 그 명령의 존재만으로 피공탁자는 명예훼손 또는 신용저하, 불안 등 정신상의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이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도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든다 할 것이며, 위 보전명령 그 자체를 다투는 데 필요한 소송의 비용도 위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 ②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된 공탁금은 채권자가 강제집행정지 자체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금채권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담보제공자의 권리행사최고에 따라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제기한 소송의 소송비용은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입은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소송비용은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된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피담보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이행판결과 확인판결을 모두 포함), 이에 준하는 서면(화해조서,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 또는 공탁자의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본다.
- ④ 가압류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된 공탁금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인바,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 그 응소를 위하여 채무자가 지출한 소송비용은 가압류로 인하여 입은 손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의 본안소송에 관한 소송비용은 가압류를 위하여 제공된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⑤ 특별사정으로 인한 가처분취소(민사집행법 제307조)의 경우, 가처분채무자가 제공하는 담보는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가처분의 취소로 말미암아 가처분목적물이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처분채권자는 가처분취소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을 얻은 후에 그 담보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②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된 공탁금은 채권자가 강제집행정지 자체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채권을 담보한다. 그 손해의 범위는 민법 제393조에 따라 정해진다. 담보제공자의 권리행사최고에 따라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제기한 소송의 소송비용은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입은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소송비용은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된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이 된다.

07 재판상 담보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3년 법원 사무관 승진)

- ① 2인이 공동명의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고 담보제공명령을 받아 담보공탁을 하면서 각자의 공탁금액을 나누어 기재하지 않고 공동으로 하나의 공탁금액을 기재한 경우 공탁자들은 균등한 비율로 공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② 재판상 담보공탁을 강제집행정지 신청인인 집행권원상의 채무자가 아니라 제3자가 한 경우 그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은 위 제3자가 아니라 채무자가 갖는다.
- ③ 재판상 담보공탁의 경우에는 법원의 담보제공을 명하는 재판에 의하여 비로소 담보를 제공할 의무가 구체화되므로 담보제공명령(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결정)이 있어야만 공탁을 할 수 있다.
- ④ 당사자 본인에게 담보제공명령(공탁명령)이 나간 경우에도 제3자는 당사자를 대신하여 자기명의로 공탁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의 허가나 담보권리자의 동의는 필요 없다.

정답) ②

해설) ② 담보제공 의무자를 위하여 제3자가 자신소유의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자기 명의로 공탁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 본인에게 담보제공명령이 나간 경우에도 제3자는 당사자를 대신하여 공탁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의 허가나 담보권리자의 동의는 필요 없으나, 제3자가 당사자를 대신하여 공탁함을 공탁서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때 제3자는 일종의 물상보증인으로서 공탁당사자적격을 가진다. 재판상 담보공탁을 제3자가 한 경우 그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은 제3자가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16

재판상 담보공탁의 지급청구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2015 법무사

- ① 재판상 담보공탁의 피공탁자는 공탁원인사실에 기재된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공탁자의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할 수 있다.
- ② 담보권리자(피공탁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경우라도 그에 선행하는 일반채권자의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이에 대항할 수 있다.
- ③ 담보권리자(피공탁자)가 담보권의 실행방법의 하나로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해 압류·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명령은 확정되어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 ④ 공탁관은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일반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한 압류가 경합된 경우, 공탁원인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제출된 때에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다.
- ⑤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공탁자 2인이 공동으로 재판상 담보공탁을 한 경우 공동으로 회수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공탁자 중 1인에 대하여 공탁금 중 1/2만의 회수청구도 응할 수 없다.



2인이 공동명의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고 담보제공명령을 받아 담보공탁을 하면서 각자의 공탁금액을 나누어 기재하지 않고 공동으로 하나의 공탁금액을 기재한 경우 공탁의 내용은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공탁자들은 균등한 비율로 공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담보취소결정 등으로 공탁원인이 소멸한 경우 공탁자 중 갑은 공탁금 중 1/2의 회수를 청구할 수 있고, 공탁관은 갑의 청구를 인가할 수 있다....로 수정

04 집행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23 법무사)

- ①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금전채권의 일부가 압류되어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하는 경우, 공탁금 중에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의 예에 따라 피공탁자(압류채무자)가 출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탁자도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하여 회수청구할 수 있다.
- ②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압류가 경합되어 있음을 이유로 한 집행공탁이 유효하려면 피압류채무에 해당하는 채무 전액을 공탁하여야 하므로, 제3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공탁하지 않아 집행공탁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공탁이 수리된 후 공탁된 금원에 대한 배당절차가 종결되었더라도 그 공탁되어 배당된 금원에 대하여는 변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③ 대여금 채권(100만 원)에 대하여 甲의 가압류결정(100만 원)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甲이 가압류신청 취하서를 가압류발령 법원에 제출했지만 법원 사무관등의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동일한 권리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100만 원)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경우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압류경합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
- ④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선후 불문) 그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을 추심하면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에 따라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 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가압류명령이 발령되었더라도,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야 그에게 송달된 경우 그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정답) ②

해설) ②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압류가 경합되어 있음을 이유로 한 공탁이 유효하려면 피압류채무에 해당하는 채무 전액을 공탁하여야 하지만 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공탁하지 않아 집행공탁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 공탁이 수리된 후 공탁된 금원에 대하여 배당이 실시되어 배당절차가 종결되었다면 그 공탁되어 배당된 금원에 대하여는 변제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15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음에도 제3채무자가 금전채권 전액을 집행공탁(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한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3년 법원사무관 승진)

- ①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은 집행공탁으로서 제3채무자는 공탁 후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부분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은 변제공탁에 해당하나, 별도의 변제공탁 사유가 없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공탁을 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는 공탁서상의 피공탁자란에 압류채무자를 기재한다.
- ③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의 예에 따라 피공탁자가 출급을 청구할 수 있고, 공탁자는 집행법원으로부터 공탁서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받아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해 회수청구할 수 있다.
- ④ 집행공탁 이후 압류명령이 취소되거나 신청의 취하 등으로 인하여 압류가 실효된 경우, 압류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액에 대하여 신청취하서 등 압류가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④ 채권자는 현금화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데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공탁을 하게 되면 압류명령은 공탁에 의한 목적달성으로 인하여 그 존재 의의를 잃고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게 된다. 즉,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공탁을 하게 되면 압류된 채권이 현금화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압류명령으로 인한 집행이 종료된다. 따라서 위 공탁 이후에는 압류채권자의 지위가 배당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므로 사유신고 전이라 하더라도 압류채권자의 압류명령 신청의 취하가 허용되지 않는다. 압류채권자가 신청취하서를 제출하더라도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압류채권자의 '배당금 교부청구권의포기' 일 뿐이라고 보아야 하며 집행법원에서는 그대로 배당재단을 유지하면서 배당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위 신청취하서를 제출한 압류채권자는 배당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제248조에 의해 공탁된 후에 압류채권자가 압류명령을 취하하거나 또는 압류명령이 취소된다해도 그것이 압류명령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변화 또는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며, 이는 배당수령권 여하의 문제로만 남게 된다.

01 甲은 乙에 대하여 물품대금 채무 1백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丙의 채권가압류결정(집행채권액: 2백만 원)을 송달받고, 위 채무 1백만 원 전액을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 가압류 집행공탁을 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23 법무사)

- ㄱ. 乙은 피공탁자로서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
 ㄴ. 甲은 민법 제489조에 기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ㄷ. 위 공탁이 성립한 후 丁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집행채권액: 2백만 원)이 공탁소에 도달한 경우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ㄹ. 위 공탁이 성립한 후 고양시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통지(집행채권액: 2백만 원)가 공탁소에 도달한 경우 고양시는 직접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
 ㅁ. 위 공탁이 성립한 후 丙의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집행채권액: 1백만 원)이 공탁소에 도달한 경우 丙은 공탁금을 직접 출급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ㄷ, ㄹ ⑤ ㄹ, ㅁ

정답) ④

해설) ㄱ,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는 가압류가 실효되지 않는 한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없다. ㄴ 민법 제489조에 기하여 공탁금을 회수는 변제공탁에서만 가능하다, ㅁ. 공탁관이 사유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후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따른 지급위탁에 의해 출급이 이루어 진다.

**12 공탁서의 피공탁자란 기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23 법무사)**

- ①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채권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는 민법 제487조에 따라 수령불능을 공탁원인으로 하여 피공탁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확지공탁을 한다.
- ② 질권의 목적물이 된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때에는 민법 제353조 제3항에 따라 질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제3채무자는 질권설정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하여 공탁한다.
- ③ 가압류채무자의 민사집행법 제282조에 의한 가압류해방공탁의 경우 공탁서에 피공탁자를 기재하지 않는다.
- ④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음을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가압류된 금액만을 공탁하는 경우 피공탁자를 기재하지 않는다.
- ⑤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압류 명령의 채무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한다.

정답) ④

해설) ④ 공탁 이후에는 가압류의 효력이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 금액에 대한 가압류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미치므로 채권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집행공탁과는 달리 가압류된 금액만을 공탁하거나 가압류와 관련된 채권 전액을 공탁하는 경우에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이나 미치지 않는 부분이나 모두 공탁신청시에 피공탁자가 존재한다.

- 09 甲은 乙에 대하여 대여금채무 2천만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丙의 가압류결정(집행채권액 : 1천만원)을 송달받고, 위 채무 2천만원 전액을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 가압류집행공탁을 하였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2021년 법원사무원
- ① 甲은 가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는 1천만원 부분에 대하여 민법 제489조에 근거하여 공탁금을 회수청구할 수 있다.
 - ② 공탁관은 위 공탁이 성립한 후 乙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고양시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집행채권액 : 1천만원)통지가 공탁소에 도달하고, 고양시가 추심청구를 하더라도 공탁관은 이에 응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에 의한 채권압류가 도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위 공탁이 성립한 후 乙가 가압류이의를 신청하여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받은 경우 공탁통지서와 가압류취소결정본 및 그 송달증명 등을 첨부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가압류취소결정의 확정증명은 별도로 첨부할 필요가 없다.
 - ④ 위 공탁이 성립한 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丁의 압류 및 추심명령(집행채권액 : 1천만원)이 송달된 경우 공탁관은 공탁금 전액(2천만원)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해설 ②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권 행사에 응하여야 하고 이를 이유로 한 변채공탁이나 집행공탁은 허용되지 않는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단서 및 제291조에 의거하여 압류통지가 이루어져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추심청구를 할 수 없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압류채권에 기한 가압류집행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제3채무자는 그 가압류를 이유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5.14. 99다3686 판례).

해설내용 전부 교체수정



제3채무자가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의 경합을 원인으로 공탁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가압류채권자뿐만 아니라 체납처분권자에 대하여도 면책되고 가압류의 효력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체납처분압류의 효력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체납처분권자는 배당절차가 개시(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가)압류금액 및 체납처분압류금액의 총액이 공탁금을 초과하거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국가(공탁관)에 송달된 경우)되기 전에는 공탁관에게 체납처분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한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공탁선례 202311).

2번 지문 및 해설 수정

10

다음은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타처분이 경합한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 2010 법우사

- ①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한 선행가압류가 있고 이후 체납처분압류가 있는 경우 추심권을 갖는 체납처분권자의 지급청구가 있으면 공탁관은 공탁물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제291조에 따라 집행공탁을 한 후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에 공탁관은 지급할 수 있다.
- ③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선행하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나 타처분이 경합하는 경우(그 선후 불문)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하지 않는다.

2번 지문 수정
아래처럼

체납처분권자는 배당절차가 개시[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가)압류금액 및 체납처분압류금액의 총액이 공탁금= 초과하거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국가(공탁관)에 송달된 경우]되기 전에는 공탁관에게 체납처분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한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선행하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나 참가압류 또는 교부청구가 후행한 경우 공탁관은 압류의 경합에 준하여 사유신고를 한다.

해설

②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한 선행가압류가 있고 추심권을 갖는 체납처분권자의 지급청구가 있으면 공탁관은 공탁물을 지급할 수 있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 추심권을 갖는 체납처분권자의 지급청구가 있으면 공탁관은 공탁물을 지급할 수 있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 추심권을 갖는 체납처분권자의 지급청구가 있으면 공탁관은 공탁물을 지급할 수 있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 추심권을 갖는 체납처분권자의 지급청구가 있으면 공탁관은 공탁물을 지급할 수 있다.

해설내용 전부 교체수정

제3채무자가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의 경합을 원인으로 공탁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가압류채권자뿐만 아니라 체납처분권자에 대하여도 면책되고 가압류의 효력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체납처분압류의 효력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체납처분권자는 배당절차가 개시[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가)압류금액 및 체납처분압류금액의 총액이 공탁금= 초과하거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국가(공탁관)에 송달된 경우]되기 전에는 공탁관에게 체납처분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한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공탁선례 202311).

11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공탁사무처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전속적인 압류를 배제하고 해당절차를 거쳐야만 하게 하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의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의 "다른 압류"에는 해당한다.

ㄴ. 동일 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 이후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한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은 할 수 있다.

ㄷ.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공탁한 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면 공탁을 할 수 없다.

ㄹ. 위 ㄷ의 경우 공탁을 할 수 있는 채권 중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공탁권은 이를 거절할 수 있다.

ㅁ.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였다는 이유로 공탁권이 공탁금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집행법원에 사용신고를 하면 이로써 해당요구의 준기가 도래하고 그 후의 해당요구를 청구하는 효력이 생긴다.

지문을... ㄱ, ㄷ...으로 수정

ㄱ, ㄴ, ㄷ

- ① ㄱ, ㄴ
 - ② ㄱ, ㄴ, ㄷ
 - ③ ㄱ, ㄴ, ㄷ, ㄹ, ㅁ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ㄷ, ㅁ
- 해설
- ㄴ.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단서 및 제291조에 의하여 집행공탁한 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경치가 이루어지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경치가 주신청구를 하던 공탁권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경치권에 대하여 권료기산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민권 등의 처분에 기한 가압류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제3채무자는 그 가압류를 이유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경치의 주신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대판 1999.5.14. 99C10060 등 참조).
- ㄷ.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였다는 이유로 공탁권이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집행법원에 사용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의한 사용신고는 효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이로써 해당요구의 준기가 도래하거나 그 후의 해당요구를 청구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07.4.12. 2004C120325, 대판 2012.5.24.

해설에 아래 ㄴ 추가

ㄴ. 공탁선례의 변경으로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의 공탁을 할 수 있다.

ㄱ, ㄷ...으로 수정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ㅁ

해설

- ㄱ.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단서 및 제291조에 의하여 집행공탁한 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통지가 이루어져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추심청구를 하면 공탁관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체납처분에 의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가압류집행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제3채무자는 그 가압류를 이유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5.14, 99다3686 등 참조).
- 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였다는 이유로 공탁관이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신고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이로써 배당요구의 종기가 도래하거나 그 후의 배당요구를 차단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07.4.12, 2004다20326, 대판 2012.5.24, 2009다88112 등).

해설에 ㄴ 추가

ㄴ. 공탁선례의 변경으로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의 공탁을 할 수 있다.

□ 관련선례 :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의 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1.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른 공탁은 (가)압류의 경합 없이 단일의 가압류로도 가능하므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이하 '가압류'라 한다)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이하 '체납처분압류'라 한다)가 경합하는 경우에 가압류의 존재만으로 공탁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이하 '압류'라 한다)와 체납처분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사인(私人)인 제3채무자는 위 각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의 법률상 차이점, 우선순위 등을 잘 알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탁을 통하여 제3채무자를 면책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점, 이후의 배당절차에 체납처분권자가 참여하는 문제도 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와 동일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그 선후를 불문하고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이 허용되는 이상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도 그 선후를 불문하고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의 공탁(이하 '가압류 집행공탁'이라 한다)을 함으로써 강제집행(징수)과 이중지급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는 가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하는 경우에도 같다.

2. 제3채무자는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를 원인으로 공탁을 신청할 때,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가압류채무자를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란에는 가압류 및 체납처분압류 사실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공탁규칙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위 공탁통지서의 발송과 가압류채권자 및 체납처분권자에 대한 공탁사실통지를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우편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3. 공탁신청을 수리한 공탁관은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고, 가압류채권자 및 체납처분권자에게는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가)압류금액 및 체납처분압류금액의 총액이 공탁금을 초과하거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국가(공탁관)에 송달된 경우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4. 한편 변제공탁에서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본래의 채권을 갈음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의 성질과 범위는 본래의 채권과 동일하다는 점, 가압류 집행공탁은 가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하고 제3채무자가 공탁관으로 바뀌게 되는 변제공탁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종전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상 부담은 새로운 제3채무자(공탁관)에 대한 채권(공탁금출급청구권)에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 제3채무자가 가압류 집행공탁을 하게 되면 민사집행법 제297조에 따라 그 가압류의 효력이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3채무자가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의 경합을 원인으로 공탁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가압류채권자뿐만 아니라 체납처분권자에 대하여도 면책되고 가압류의 효력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체납처분압류의 효력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체납처분권자는 배당절차가 개시|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가)압류금액 및 체납처분압류금액의 총액이 공탁금을 초과하거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국가(공탁관)에 송달된 경우|되기 전에는 공탁관에게 체납처분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한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공탁선례 202311).

16 가압류해방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3년 법원사무관 승진)

- ① 해방공탁으로 인한 가압류집행취소가 이루어져도 가압류명령 그 자체의 효력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공탁자인 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게 된다.
- ② 가압류채권자는 본안승소판결 등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가압류채무자가 가지는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소에 대하여 회수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경우의 집행권원으로는 확정판결은 포함되나,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③ 공탁자의 다른 채권자가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압류가 경합하게 되므로 공탁관의 사유신고로 개시되는 집행법원의 배당실시절차에서 배당금수령채권자로서 그 지급받을 자격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아야만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 ④ 가압류해방금액은 가압류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금전에 의한 공탁만이 허용되고,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그 유가증권이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②

해설) ② 가압류채권자는 본안승소확정판결 등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소에 대하여 회수청구를 할 수 있으며(전부명령은 확정증명, 추심명령은 송달증명 각 첨부), 그 경우의 집행권원으로는 확정판결뿐만 아니라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도 포함된다.

17 채무자 甲은 채권자 乙의 채권가압류결정(해방금액 1천만 원)을 송달 받고, 민사집행법 제282조 가압류해방공탁을 하려고 한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23 법무사)

ㄱ.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유가증권은 가압류해방공탁의 공탁물이 될 수 있다.
 ㄴ. 甲의 친구 丙이 甲을 대신하여 가압류해방공탁을 할 수는 없다.
 ㄷ. 위 공탁이 성립한 후 고양시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통지(집행채권액 1천만 원)이 공탁소에 도달하면 공탁관은 지체없이 가압류 발령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ㄹ. 위 공탁이 성립한 후 丙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집행채권액 1천만 원)이 공탁소에 도달한 경우 공탁관은 지체없이 압류를 발령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ㄱ, ㄷ
 ④ ㄱ, ㄹ ⑤ ㄴ, ㄷ

정답) ②

해설) ㄱ, 가압류해방금액은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는 취지의 이른바 소송상의 담보와는 달리 가압류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것으로써 금전에 의한 공탁만이 허용되고,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그 유가증권이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ㄷ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의 추심권 행사에 응하여야 하고 이를 이유로 한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민사집행법 248조 1항 단서 및 2091조에 의하여 집행공탁한 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통지가 이루어져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추심청구를 하면 공탁관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체납처분에 의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가압류집행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제3채무자는 그 가압류를 이유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

18 공탁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23년 법원사무관 승진)

- ① 물상보증인, 연대채무자, 보증인 등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 ② 국세나 지방세의 징수유예, 연부연납의 허가를 구하려는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제3자는 납세담보공탁을 할 수 있다.
- ③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에 제3자인 丙이 가압류된 그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제3취득자인 丙은 가압류집행취소를 위한 해방공탁을 할 수 있다.
- ④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은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

【문9】

정답) ③

해설) ③ 가압류해방공탁을 할 수 있는 자는 가압류채무자이다. 만일 제3자의 해방공탁을 인정한다면 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은 공탁한 제3자가 가지므로 나중에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도 제3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집행은 아무런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제3자에 의한 가압류해방공탁은 허용되지 않는다. 실무상 가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가압류를 말소하기 위하여 해방공탁을 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제3취득자는 해방공탁을 할 수는 없다.

12 甲은 乙에게 대여금채무(1천만 원, 양도금지특약 있음)를 부담하고 있는데 위 채무금 전액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서(양수인 丙)와 丁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순차적으로 송달받고 혼합공탁을 하려고 한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23 법무사)

- ㄱ. 甲은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공탁근거법령으로 피공탁자를 '乙 또는 丙'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ㄴ. 甲이 혼합공탁을 한 후 乙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가 공탁소에 제출된 때에 공탁관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ㄷ. 丁은 乙과 丙을 피고로 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의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직접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
 ㄹ. 丙은 乙과 丁을 피고로 하여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의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직접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ㄹ ⑤ ㄴ, ㄷ

정답) ③

해설) ㄴ. 甲이 혼합공탁을 한 후 乙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가 공탁소에 제출된 때에 배당절차가 진행된다. ㄷ. 丙은 乙과 丁을 피고로 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의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직접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

02 다음 중 공탁금지급청구권(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복수의 압류(가압류)가 있고 집행채권의 총액이 피압류 채권 총액을 초과하더라도 사유신고의 대상이 아닌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2023 법무사)

- ㄱ.복수의 가압류만 있는 경우
- ㄴ.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 ㄷ.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선행하고,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후행한 경우
- ㄹ.공탁금지급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압류, 가압류 등이 경합된 경우
- ㅁ.선행의 압류(또는 가압류) 후에 목적채권인 공탁금지급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후 압류, 가압류 등이 경합한 경우
- ㅂ.금전공탁이 아닌 유가증권 또는 물품공탁의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

① ㄱ, ㄴ, ㄹ, ㅁ, ㅂ

② ㄱ, ㄴ, ㅁ, ㅂ

③ ㄱ, ㄴ, ㄹ, ㅁ

④ ㄴ, ㄷ, ㄹ, ㅁ, ㅂ

⑤ ㄴ, ㄷ, ㅁ, ㅂ

정답) ①

해설) ㄷ. 다음과 같은 경우는 비록 복수의 압류가 있고 집행채권의 총액이 피압류채권(공탁금 지급청구권)총액을 초과하더라도 사유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① 복수의 가압류만 있는 경우 ②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그 선후를 불문한다) ③ 공탁금 지급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압류·가압류 등이 경합한 경우 ④ 선행의 압류(또는 가압류) 후에 목적채권인 공탁금 지급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후 압류·가압류 등이 경합한 경우 ⑤ 금전공탁이 아닌 유가증권 또는 물품공탁의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

17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3년 법원사무관 승진)

- ①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수 개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공탁관에게 송달된 경우, 공탁관은 그 압류 및 추심채권자들 사이의 우열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아 사유신고를 할 수 있다.
- ②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한 후에,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거나, 공탁사유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 중 일방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피공탁자(압류채무자)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제출되기 전이라도 공탁관은 즉시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④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되었으나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공탁관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공탁 및 공탁사유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정답) ③

해설) ③ 상대적 불확지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 중 일방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피공탁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제출된 때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혼합공탁이 아니라 상대적 불확지공탁후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해당 피공탁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제출되어 사유신고를 하는 이상 사유신고를 받은 집행법원이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에 관한 증명서면이 제출될 때까지 배당절차를 정지하는 것은 아니다.

04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3년 법원사무관 승진)

- ①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채권자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일'로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한다.
- ② 변제공탁의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공탁소에 도달하더라도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 ③ 소멸시효가 완성된 변제공탁금을 국고수입 납부하기 전에 피공탁자가 지급청구를 할 경우 공탁관은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 ④ 변제공탁의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공탁사실 증명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시효이익 포기로 간주된다.

정답) ③

해설) ③ 소멸시효가 완성된 공탁금은 국고수입 납부 전이라도 출급·회수 청구를 인가할 수 없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14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23 법무사)

- ① 공탁관이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 등 정당한 권리자에 대하여 공탁사건의 완결 여부의 문의서를 발송한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된다.
- ② 공탁관이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에 대하여 해당 사건의 공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를 구두로 답한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된다.
- ③ 변제공탁에 대해 피공탁자로부터 제출된 수락서를 공탁관이 받은 경우에는 그것만으로 출급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된다.
- ④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피압류채권 즉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시효중단사유가 되지 않는다.
- ⑤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시효중단은 출급청구권의 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다.

정답) ③

해설) ③ 변제공탁에 대해 피공탁자로부터 제출된 수락서를 공탁관이 받았다 해도 그것만으로 출급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